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단123625(본소), 2019가단13174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변론 종결 2020. 4. 9.

판결 선고 2020. 7.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반소원고) 지분 1/2 전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1,525,061/815,599,680 지분에 관하여 2020. 3. 16.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2,598,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다. 2020. 3. 11.부터 원고(반소피고) 또는 피고(반소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553,3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로 인한 것을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가.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7. 16. 접수 제660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1,626,389/815,599,6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598,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1)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3. 11.부터 매월 649,5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인데, 망인은 2019. 6.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 2인이 있다.

나. 망 C는 2016. 3. 9.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제2016년 제160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군포시 E아파트, F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임대인 G), H은행에 대한 유언효력발생 당시의 예금채권 전액(계좌번호 I 예금주 망인)을 포함하여 망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민법 제1068조에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7. 16. 접수 제66095호로, '2019. 6. 2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 소유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아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주위적 청구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임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망인이 자신 소유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의 계산방법으로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3) 유류분 부족액의 존부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1) 적극적 상속재산액 : 없음

(2) 증여재산액(유증): 895,599,680원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815,599,680원(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나) 전세보증금 80,000,000원(갑 제1호증에는 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증의 효력발생시에 잔존한 전세보증금은 80,000,000원으로 보이므로 80,000,000원만을 인정한다. 피고는 감액된 전세보증금 20,000,000원도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다) 합계 : 895,599,680원(피고는 이에 더하여 원고가 망인 명의 계좌에서 60,405,314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 명의 계좌에서 위 금액이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에 대한 증여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상속채무액 : 270,500,562원

(가) K조합(L)에 대한 대출금채무 119,509,228원(을 제7호증 또는 다툼 없는 사실)

(나) M에 대한 카드대금채무 991,334원(을 제7호증 또는 다툼 없는 사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총 150,000,000원(= 1층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²) + 2층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3층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갑 제3호증 또는 다툼 없는 사실)

(4) 소결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은 625,099,118원(= 적극적 상속재산액 0원 + 증여재산액 895,599,680원 - 상속채무액 270,500,562원)이다.

나) 피고의 유류분 비율(B): $1/4$ (= 피고의 법정상속분 $1/2 \times$ 법정유류분 $1/2$)

다) 피고의 특별수익액(C): 0원

라) 피고의 순상속액(D): -135,250,281원

(1)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0원

(2) 상속채무 분담액 : 135,250,281원[원고는 '채무를 공동 부담하는 것보다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류분 침해액 산정에 있어서 망자의 부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바(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설령 원고에게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할 의사가 있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상속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추후 임대차보증금 등 상속채무를 전부 이행하는 경우 구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채무 분담액 자체는 피고의 순상속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마) 유류분 부족액 : 291,525,061원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A. 625,099,118원) × (피고의 유류분 비율 B. 1/4)} - (피고의 특별수익액 C. 0원) - (피고의 순상속액 D. -135,250,281원)]

나. 반환의 범위

망인의 재산은 전액 원고가 유증받았으므로,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 291,525,061원 전액을 원고가 반환하여야 한다.

다. 유류분반환의 방법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그리고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그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수유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세보증금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는 원물반환으로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전세보증금 채권의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전세보증금 채권은 원고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인바, 이를 일부 양도하는 경우 원고의 주거를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고려하면 피고의 채권행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임을 전제로 원물반환을 할 것인지 가액반환을 할 것인지만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만을 반환대상인 수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291,525,061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815,599,68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91,525,061/815,599,680$ 지분이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2020. 3. 16.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1)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외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201조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바(민법 제197조 제2항),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제기시인 2019. 10. 15. 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91,525,061/815,599,680$ 지분에 관하여는 악의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과실로서 수취하고 있는 차임은 월 1,700,000원(= 1층 차임 월 1,200,000원, 2층 차임 월 500,000원)임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액은 월 607,641원[= 1,700,000원 × ($291,525,061/815,599,6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먼저 피고는 2020. 3. 10.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바, 2019. 10. 15.부터 2020. 3. 10.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2,933,439원[= 월 607,641원 × {4 + 24/29}개월]으로서 피고가 청구하는 2,598,16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인 2,598,160원을 인정한다. 한편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 2019. 10.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는 위 부당이득의 일부에 대하여는 발생하기도 전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부당이득이 전부 발생한 2020. 3. 1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3) 다음으로 피고는 2020. 3. 11. 이후의 부당이득반환도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20. 3. 11.부터 위와 같이 월 607,641원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되,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더 이상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악의의 점유자라고 볼 수 없게 되므로, 그 때까지만 지급을 명한다.

마.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1,525,061/815,599,680 지분에 관하여 2020. 3. 16.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2,598,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3. 11.부터 원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607,6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지충현

별지

- 1)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 사건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2) 갑 제3호증 제1면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 보증금은 20,000,000원이나, 2015. 4. 15.부터는

보증금이 30,000,000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